칠보고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68. 11. 20. 개정 1973. 12. 22.(제1차 개정) 개정 1975. 10.(제2차 개정) 개정 1981. 10. 30.(제3차 개정) 개정 1983. 10. 30.(제4차 개정) 개정 1984. 11. 6.(제5차 개정) 개정 1985. 3. 1.(제6차 개정) 개정 1987. 3. 1.(제7차 개정) 개정 1987. 9. 5.(제8차 개정) 개정 1988. 9. 2.(제9차 개정) 개정 1989. 9. 1.(제10차 개정) 개정 1991. 8. 16.(제11차 개정) 개정 1991. 10. 12.(제12차 개정) 개정 1992. 8. 20.(제13차 개정) 개정 1983. 8. 18.(제14차 개정) 개정 1994. 9. 29.(제15차 개정) 개정 1996. 3. 1.(제16차 개정) 개정 1998. 3. 1.(제17차 개정) 개정 1998. 11. 14.(제18차 개정)

개정 1999. 3. 1. 행정 제 869호(제19차 개정)

개정 1999. 11. 26.(제20차 개정)

개정 2000. 3. 1(제21차 개정)

개정 2003. 2.28. 행정 제353호(제22차 개정)

개정 2004. 5.28. 행정 제2887호(제23차 개정)

개정 2006. 4. 11.칠보고 제1163호(제24차 개정)

개정 2009. 4. 13. 칠보고 제1412호(제25차 개정)

개정 2011. 5. 6. 칠보고 제3033호(제26차 개정)

개정 2017.8.28. 칠보고 제558호(제27차 개정)

개정 2021.3.31. 칠보고 (제28차 개정)

개정 2023.4.10. 칠보고 (제2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상위 법률(또는 지침 등)과 상충되는 내용들은 해당학년도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의 각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명칭) 우리학교는 칠보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건흥 2길 26-5(구 시산리 625)번지에 둔다.(개정 '11.5.6)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09.4.13)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3월5일):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3. 하계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4. 동계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5.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6. 학교장이 정한 기타 재량휴업일
- ② 제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본 학칙의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급(또는 유관)기관의 통보 및 권고에 의해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학과 및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8조(학과) ①우리학교에는 전기과를 둔다.

②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그린에너지과로 개편한다.(신설 '11.5.6)

③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기과로 개편한다.(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3999(2017.6.9.))

제9조(학급수) 우리학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학생정원) 우리학교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유급생
 -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③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정원 외로 배정한 자.
- ④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 ⑤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 운영 방법 등·교과·수업일수·고사(교과학습 평가)·교외체험학습

제11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교과협의회 협의 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이 정한다.

제12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등교시간은 08시30분이고, 하교 시간은 16시10분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우리학교 학칙 제14조(교외체험학습)'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교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업일수) ① 우리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 ⑥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①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해당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 출결상황, 성적 등을 처리한다.
- 제15조(교과학습 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고, 해당 학년도 우리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우리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각 교과별 평가계획에 의한다.

제16조(교외체험학습) <삭제> (2023.04.10.)

제5장 입학(시기,자격,전형방법)·재입학·전편입학(서류)·휴학·자퇴·퇴학·수료 및 졸업(과정수료의 인정)

제17조(입학 시기) 입학,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사안이 발생한 해당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할 수 있다.

제18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제19조(입학전형방법) ① 우리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특성화 고등학교 추천 입학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09.4.13. '11.5.6)
 - ②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의 '전라북도 비평준화지역(학교장 전형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지침서'에 따라 시행한다.
- 제20조(재입학)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 이하 학년으로 한다.
- 제21조(전·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우리학교 학칙'과 해당학년도의 우리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의 제1장(전·편입학 총직) III. 방침에 준하여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다.
 - ④ 우리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과 '2021학년도 칠보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을 따른다.
 - ⑤ 전·편입학시에 제출할 서류는 '2021학년도 칠보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에 따른다.
- 제22조(입학 서류) 우리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전·편입학 서류) ①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 해당학년도에 적용되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또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보조부 등)등을 전산으로 확인 후 학적반영을 한다.
- 제2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부사관학교 입교(3학년 2학기)'와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 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 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 복학 시기는 제14조(수업일수)에 따라 정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 상을 출석일수로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25조(자퇴) 학생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해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 제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 제2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매학기학기말 성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학력인정)자료 등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이수로 봄)한 결과로 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우리학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2017.3.21.)과「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따른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8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 ①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석차등급 산출 가능 과목 대상)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 이내이고, 전공과 전문교과의 교과목(이수한 단위 수 기준)의 80%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제1항2의 지능검사에 대한 객관성, 공인성 확보 및 검사지에 대한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권고사항을 준수한다.
- 1. 단체 검사를 지양하고 개인비용으로 검사
- 2. 검사 기관 및 검사 시험지 등은 서로 달라야 함
- 3. 각 검사 결과 간의 기간 차는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을 준수
- 4. 각급학교별 입학 이후에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
- ④ 제1항3의 경시·경연대회 3등 이내 입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회규모, 주관·주최 기관, 수 상등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 제2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 전까지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신청(1~2 월 중, 신입생은 1학기 중)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본 학칙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학교규칙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017.3.21.)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3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②P. 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석차등급 산출 가능 과목 대상)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 이내이고, 전공과의 전문교과의 교과 목(이수한 단위 수 기준)의 80%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
-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본 학칙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학교규칙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017.3.21.)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본 학칙 제28조 제2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본 학칙 제28조 제2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 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신청: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신청 (1~2월 중, 신입생은 1학기 중)
- 2. 대상자 선정: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3월 말)이내에 하되 신입생의 경우 2학기 시작 전까지 평가 대상자 선정
- 3. 평가: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4. 인정: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인정
-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신청→선정기준 고려→교무회의 사정 →학교장 선정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 2. 절차: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기준에 맞는 학생 선정→상급학교 전형응시자격 평가→상급학교 전형응시→상급학교 합격→조기졸업
- **제33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제34조(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우리학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제3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사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017.3.21.)에 따른다.
-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당해 학년도의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교무부장)을 포함하여 6명(학부모(1

- 명), 실과부장(1명), 해당 담임(1명), 해당교과교사(1명),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 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조기진급·조기졸업자의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무상)·입학금(무상)·기타 비용 징수

- 제38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무상)·입학금(무상)·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 ③ 기타의 비용(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39조(수업료 등의 감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무상)
- 제40조(체납자 조치) 학교의 장은 체납된 기타의 비용 납부에 대해 교육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8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41조(징수금) <삭제> (2023.04.10.) 제42조(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삭제> (2023.04.10.) 제43조(체납자 조치) <삭제> (2023.04.10.)

제9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 제44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과 효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예·체능 또는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학교계획을 수립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제45조(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항처분
- 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⑧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⑩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이 있다. 제47조 (퇴학처분) ① 퇴학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4. 각종 법령에 의해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48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

-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5. 각종 봉사활동
-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49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내부결 제된 문건 등)을 둔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1조(출결사항)

- ① 출결사항은 다음의 ②호부터 ⑧호까지와 같이 처리하되, 해당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또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②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세부 내용은 제43조(경조사 출결)참고)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 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08시30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08시30분)과 하교시간(16시10분)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수업시간의 일부(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① 같은 종류의 결석으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것을 장기결석이라고 하고, 결석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결석기간은 7일로 정한다.
- 제52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외체험학습 기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으로 인정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제53조(결석의 종류)** 학칙(당해년도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부득이 한(병원입원, 교통사고 등)경우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④ 위①~③항을 포함하여 이 외의 상황의 출결 처리는 해당학년도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와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54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우리학교 학교전담기구 규정에 의한다.
- 제5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 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우리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참고)
 - 1.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함(시행령 제15조에 근거)
 - 2. (위원 구성)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등(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
 - 3.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4. (개의·의결 정족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4.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5.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 6. 그 밖에 교직원 회의에서 요청한 사안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직원 회의에서 요청한 경우
- ④ 이외의 세부사항은 우리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장 장애인 차별 금지

- **제56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지 않는다.
 -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 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제57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 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제58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 제59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제60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지 않는다.
 -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제61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3장 학칙 개정

- 제62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1개월 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63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3.2.28. 행정 제353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04.02.17)호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6.04.11. 칠보고 제1163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04.13. 칠보고 제1412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05.06. 칠보고 제3033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8.28. 칠보고 제558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28차 개정안)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2021.03.31.)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29차 개정안)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2023.04.10..)